

6. 본문: 붙임과 같음

7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제출 근거

-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에 따라 동해면 구절산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내용

- (위 치)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일원
- (면 적) 3,307㎡
- (주요내용)
 - 용도지역 변경: 농림지역 → 계획관리지역(농업보호구역 해제)
 - 군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

○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구절폭포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, 방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마을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8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9. 토 론: 없음

10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찬성의견

11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2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